

#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제정(안) 보고

제출년월일 : 2008. 1. 11.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정이유

산업자원부 주관 전국 테크노파크를 지역 혁신거점기관으로 육성하는 기술혁신지원체계 개편 계획에 따라 현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을 「대전테크노 파크」로 개편하여 다양한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재단법인의 명칭

-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영문으로는 『Daejeon Techno Park』

### 나.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임원 : 이사장1인, 원장1인, 이사15인이하(이사장 및 원장 포함), 감사2인  
- 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비상근

- 이사(15인 이하)

- 이사장 : 이사회에서 선임 (대전광역시장을 이사장으로 선임)

**당연직  
(5명)**

1.대전광역시장 2.원장 3.산업자원부 소관업무담당국장 4.대전광역시 담당국장 5. 법인에 최다 출연한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 기관의장

**선임직**

원장 추천 ⇨ 이사장 제청 ⇨ 이사회에서 선출(임기 3년)

- 원장

- 선임 : 원장후보추천(위)복수추천 ⇨ 이사회 선임 ⇨ 이사장 임명  
(산업자원부 장관 승인)

- 원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신설
- 대학교수는 교수직 사퇴 또는 휴직의 경우시 원장선임 가능
- 해임 :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
- 해임시 산자부장관의 승인 필요(현 산자부고시 규정 유지)

<b>해임 요건</b>	· 법령·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이사회와 체결한 성과 협약 결과가 매우 미약한 경우 등
------------------	--

- 책임(권한) : 법인대표, 소속직원 지휘·감독, 모든사업의 최종책임자
- 원장에 대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 ○ 감사(2인)

-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이사회에서 선임
- 외부감사는 지자체·산자부 합동으로 실시

## 다. 직속부서

○ 원장의 직속부서 : 지역사업단, 전략산업기획단, 특화센터, 정보산업진흥본부

### ○ 직속부서장

- 공무원이 아닌 자(단, 국공립대학 교수는 예외)중에서 3년 계약직으로 임용하고, 상근을 원칙으로 함
- 선임절차 : 부서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 원장이 임명
- ※ 단, 전략산업기획단장의 임면은 산자부와 사전협의
- 직속부서장 ⇨ 원장과 성과협약체결 및 부서장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 ○ 경영지원팀(실)

- TP내 모든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경영지원팀(실)을 직속부서 보다 하위조직인 팀(실)으로 설치

## 라. 위원회 설치

### ○ 운영위원회

- 테크노파크내 통합 심의기구로 단일 운영위원회 설치

- 원장포함 15인 이내로 구성(위원장 : 원장)
  - 당연직 : 직속부서장, 산자부 소관업무과장, 시 소관업무 담당과(팀)장
  - ※ 법인에 최다출연한 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관일 경우 해당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1인을 당연직으로 포함

○ 인사위원회

- 직원의 인사사항을 통합 심의하는 단일의 인사위원회 설치
- 구성 : 원장이 추천하는 1인(변호사 등) 및 직속부서장으로 구성
- 인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은 인사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자문위원회

- 원장은 기획, 예산, 자산, 및 사업등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 3. 참고사항

#### 가.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단지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등은 사업시행자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 나. 주요추진사업

1. 인력양성·기술개발·기업지원 등 지역혁신 주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2. 창업보육·인력개발·정보이용·교육훈련 등 기업지원 사업
3. 산업기술지도 작성 등 지역전략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4.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5.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전광역시장이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등

#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제정안

산자부 표준정관(안)	대전TP 정관(안)
<b>제 1 장 총 칙</b>	<b>제 1 장 총 칙</b>
<b>제1조 (명칭)</b> 이 법인은 재단법인○○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00 Technopark라 한다.	<b>제1조 (명칭)</b> 이 법인은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Daejeon Technopark라 한다.
<b>제2조 (목적)</b> 법인은○○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b>제2조 (목적)</b> 법인은 대전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b>제3조 (사무소 등)</b> 법인의 주사무소는 ○○광역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소, 산하 기관 또는 자회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b>제3조 (사무소 등)</b> 법인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소, 산하 기관 또는 자회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b>제4조 (사업)</b>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2. 지역 기술정책·산업정책 등 지역전략산업 기획업무 총괄 3. 산업기술지도 작성 등 지역전략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4. 지역 내 기술혁신역량 조사 및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5. 지역발전연구원 및 지역혁신협의회의 연구과정 참여 및 지원 6.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사업 7.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리 8. 산, 학, 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9. 창업보육, 연구개발, 정보이용, 교육훈련, 경영지도, 시험인증 등 기업지원사업	<b>제4조 (사업)</b>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2. 지역 기술정책·산업정책 등 지역전략산업 기획업무 총괄 3. 산업기술지도 작성 등 지역전략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4. 지역 내 기술혁신역량 조사 및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5. 지역발전연구원 및 지역혁신협의회의 연구과정 참여 및 지원 6.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사업 7.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리 8. 산, 학, 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9. 창업보육, 연구개발, 정보이용, 교육훈련, 경영지도, 시험인증 등 기업지원사업

산자부 표준정관(안)	대전TP 정관(안)
<p>10.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11.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12. 정부기관 등의 위임·위탁사업 13.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  14. 혁신거점 설치 등 지역특화센터사업 운영  15. 특화센터 등의 장비도입 통합심의 등 지역의 장비 및 시설의 통합관리  16. 기타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10.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11.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12. 정부기관 등의 위임·위탁사업  13.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  14. 혁신거점 설치 등 지역특화센터사업 운영  15. 특화센터 등의 장비도입 통합심의 등 지역의 장비 및 시설의 통합관리  16. 기타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p> <p>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2 장 임 원 및 직 원</b></p> <p><b>제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b> ①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사장 1인</li> <li>2. 원장 1인</li> <li>3. 이사 15인 이하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li> <li>4. 감사 2인</li> </ol> <p>② 제1항의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2 장 임 원 및 직 원</b></p> <p><b>제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b> ①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사장 1인</li> <li>2. 원장 1인</li> <li>3. 이사 15인 이하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li> <li>4. 감사 2인</li> </ol> <p>② 제1항의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으로 한다.</p>
<p><b>제6조 (이사)</b>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이하“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광역시장</li> <li>2. 원장</li> <li>3. 산업자원부 소관업무 담당국장</li> <li>4. ○○광역시 소관업무 담당국장</li> </ol>	<p><b>제6조 (이사)</b>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 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이하“당연직 이사”라 한다)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전광역시장</li> <li>2. 원장</li> <li>3. 산업자원부 소관업무 담당국장</li> <li>4. 대전광역시 소관업무 담당국장(또는본부장)</li> </ol>

산자부 표준정관(안)	대전TP 정관(안)
<p>5. 법인에 최다 출연한 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인 경우 해당기관의 장</p> <p>6. 산자부·광역지자체를 제외한 기관중 최다 출연기관의 장</p> <p>②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이하“선임직 이사”라 한다)는 지역 경제인, 학계, 과학기술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사 중에서 원장의 추천과 이사장의 제청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p> <p>③ 법인에 출연한 기관은 출연지분만큼 원장에게 선임직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단, 법인에 출연한 기관의 구성원이 당연직 이사로 있는 경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수 만큼 선임직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p>	<p>5. 법인에 최다 출연한 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인 경우 해당기관의 장</p> <p>6. 산자부·광역지자체를 제외한 기관중 최다 출연기관의 장</p> <p>②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이하“선임직 이사”라 한다)는 지역 경제인, 학계, 과학기술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사 중에서 원장의 추천과 이사장의 제청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p> <p>③ 법인에 출연한 기관은 출연지분만큼 원장에게 선임직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단, 법인에 출연한 기관의 구성원이 당연직 이사로 있는 경우,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수 만큼 선임직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p>
<p><b>제7조 (이사의 임기)</b>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이사직을 승계한다.</p> <p>②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선임직 이사 반수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1년 6월로 할 수 있다.</p> <p>③ 임기가 만료된 선임직 이사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p> <p>④ 선임직 이사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b>제7조 (이사의 임기)</b>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이사직을 승계한다.</p> <p>②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선임직 이사 반수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1년 6월로 할 수 있다.</p> <p>③ 임기가 만료된 선임직 이사는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p> <p>④ 선임직 이사가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b>제8조 (이사장)</b>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p> <p>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단, 이사장이 이사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p>	<p><b>제8조 (이사장)</b>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p> <p>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단, 이사장이 이사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p>

산자부 표준정관(안)	대전TP 정관(안)
<p>③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되 이사회는 그 후임자를 지체 없이 선임하여야 한다.</p>	<p>③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되 이사회는 그 후임자를 지체 없이 선임하여야 한다.</p>
<p><b>제9조 (원장)</b> ①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상근이어야 한다. 단, 법인소재 광역지자체지역의 대학교수는 교수직을 사퇴 또는 휴직한 경우에 한해 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p> <p>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원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그 후임자의 임기도 3년으로 한다.</p> <p>③ 원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전략산업기획단의 평가업무는 전략산업기획단장이 관장한다.</p> <p>④ 원장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이사회와 체결한 성과협약에 비해 매우 미흡한 성과를 내는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⑤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시에 이사장과 성과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원장의 연임 결정, 차기 연도 연봉 또는 성과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p> <p>⑥ 원장의 궐위 시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기업지원단장(또는 지역사업단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⑦ 원장추천위원회는 ○○광역시장의 추천하는 2인, 산자부 장관이 추천하는 2인, 지역 경제단체장 중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자, 산</p>	<p><b>제9조 (원장)</b> ① 원장은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상근이어야 한다. 단, 법인소재 광역지자체지역의 대학교수는 교수직을 사퇴 또는 휴직한 경우에 한해 원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p> <p>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원장이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그 후임자의 임기도 3년으로 한다.</p> <p>③ 원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전략산업기획단의 평가업무는 전략산업기획단장이 관장한다.</p> <p>④ 원장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이사회와 체결한 성과협약에 비해 매우 미흡한 성과를 내는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원장을 해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⑤ 원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시에 이사장과 성과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원장의 연임 결정, 차기 연도 연봉 또는 성과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p> <p>⑥ 원장의 궐위 시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지역사업단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⑦ 원장추천위원회는 대전광역시장의 추천하는 2인, 산자부 장관이 추천하는 2인, 지역 경제단체장 중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자, 산업</p>

산자부 표준정관(안)	대전TP 정관(안)
<p>업연구원장, 산자부 담당과장, 지자체 담당과장 등 8인으로 구성한다. 단, 법인에 최다출연한 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p> <p>⑧ 7항에 따라 ○○광역시장, 산자부장관 또는 법인에 출연한 기관이 추천하는 경우에, 법인의 임·직원 및 공무원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p> <p>⑨ 기타 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p>	<p>연구원장, 산자부 담당과장, 지자체 담당국장 (또는 본부장) 등 8인으로 구성한다. 단, 법인에 최다출연한 기관이 기초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p> <p>⑧ 7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 산자부장관 또는 법인에 출연한 기관이 추천하는 경우에, 법인의 임·직원 및 공무원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p> <p>⑨ 기타 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p>
<p><b>제10조 (감사)</b> ①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p> <p>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③ 감사는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감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에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⑥ 감사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b>제10조 (감사)</b> ①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p> <p>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p> <p>③ 감사는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감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에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p> <p>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p> <p>⑥ 감사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p>
<p><b>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b>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p> <p>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p> <p>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p>	<p><b>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b>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p> <p>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p> <p>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p>

산자부 표준정관(안)	대전TP 정관(안)
<p>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p> <p>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판명된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p>	<p>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p> <p>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판명된 때에는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p>
<p><b>제12조 (신분보장)</b>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위반 한 때</li> <li>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li> <li>3. 신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때</li> </ol> <p>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을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b>제12조 (신분보장)</b> ①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위반 한 때</li> <li>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때</li> <li>3. 신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한 때</li> </ol> <p>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을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
<p><b>제13조 (직제)</b> 법인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직제 규정으로 정한다.</p>	<p><b>제13조 (직제)</b> 법인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직제 규정으로 정한다.</p>
<p><b>제14조 (구성원)</b> ① 법인의 구성원은 경영진과 직원으로 하고, 경영진은 임원과 직속부서장으로 구성한다.</p> <p>② 직속부서장은 제27조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p> <p>③ 직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직원의 채용, 배치 및 이동, 승진급, 평가, 보상, 복무, 퇴직 등 제반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p><b>제14조 (구성원)</b> ① 법인의 구성원은 경영진과 직원으로 하고, 경영진은 임원과 직속부서장으로 구성한다.</p> <p>② 직속부서장은 제27조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p> <p>③ 직원은 원장이 임명하며, 직원의 채용, 배치 및 이동, 승진급, 평가, 보상, 복무, 퇴직 등 제반 인사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산자부 표준정관(안)	대전TP 정관(안)
<p><b>제15조 (결직 제한)</b> ① 원장, 직속부서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p> <p>② 원장은 이사회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속부서장과 직원은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p>	<p><b>제15조 (결직 제한)</b> ① 원장, 직속부서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p> <p>② 원장은 이사회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직속부서장과 직원은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장 이 사 회</b></p> <p><b>제16조 (이사회회의 구성)</b> 이사회회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3 장 이 사 회</b></p> <p><b>제16조 (이사회회의 구성)</b> 이사회회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p>
<p><b>제17조 (이사회회의 의결사항)</b> 이사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li> <li>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li> <li>3. 차입금 및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li> <li>4. 정관의 개정 및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li> <li>5.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li> <li>6.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li> <li>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li> <li>8. 기타 이사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b>제17조 (이사회회의 의결사항)</b> 이사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li> <li>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li> <li>3. 차입금 및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li> <li>4. 정관의 개정 및 중요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li> <li>5.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li> <li>6.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li> <li>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회의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li> <li>8. 기타 이사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b>제18조 (이사회회의 소집)</b></p> <p>① 이사회회의는 정기이사회회의와 임시이사회회의로 구분한다.</p> <p>② 정기이사회회의는 회계연도 개시 3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회의는 원장, 감사 또는 재석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p>	<p><b>제18조 (이사회회의 소집)</b></p> <p>① 이사회회의는 정기이사회회의와 임시이사회회의로 구분한다.</p> <p>② 정기이사회회의는 회계연도 개시 3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회의는 원장, 감사 또는 재석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p>

산자부 표준정관(안)	대전TP 정관(안)
<p><b>제19조 (의결정족수)</b>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투표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p> <p>③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b>제19조 (의결정족수)</b>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투표결과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p> <p>③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b>제20조 (서면결의)</b>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p>	<p><b>제20조 (서면결의)</b>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p>
<p><b>제21조 (이사회결의 제척사유)</b>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련되는 이사장 내지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사장 및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li> <li>2. 법인과 이사장, 법인과 이사, 또는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li> <li>3. 법인과 이사장, 법인과 이사, 또는 이사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li> </ol>	<p><b>제21조 (이사회결의 제척사유)</b>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관련되는 이사장 내지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사장 및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li> <li>2. 법인과 이사장, 법인과 이사, 또는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li> <li>3. 법인과 이사장, 법인과 이사, 또는 이사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li> </ol>
<p><b>제22조 (의사록 등)</b>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p>	<p><b>제22조 (의사록 등)</b> 이사회 의사진행 및 의</p>

산자부 표준정관(안)	대전TP 정관(안)
<p>결사함에 대하여는 녹취한 바를 바탕으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p>	<p>결사함에 대하여는 녹취한 바를 바탕으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장 직속부서 등</b></p> <p><b>제23조 (직속부서의 설치)</b> ① 원장의 직속부서로 기업지원단(또는 지역사업단 등), 전략산업기획단 및 특화센터를 둔다. ② 직속부서의 사무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4 장 직속부서 등</b></p> <p><b>제23조 (직속부서의 설치)</b> ① 원장의 직속부서로 지역사업단, 전략산업기획단, 특화센터 및 정보산업진흥본부를 둔다. ② 직속부서의 사무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p>
<p><b>제24조 (기업지원단 또는 지역사업단 등)</b> 기업지원단(또는 지역사업단 등)은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마케팅, 기업 및 투자유치, 창업보육, 교육훈련, 시설·장비구축, 시험생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p>	<p><b>제24조 (지역사업단)</b> 지역사업단은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기술이전, 마케팅, 기업 및 투자유치, 창업보육, 교육훈련, 시설·장비구축, 시험생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p>
<p><b>제25조 (전략산업기획단)</b> 전략산업기획단은 지역전략산업중심의 산업정책기획, R&amp;D 및 지역혁신사업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p>	<p><b>제25조 (전략산업기획단)</b> 전략산업기획단은 지역전략산업중심의 산업정책기획, R&amp;D 및 지역혁신사업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p>
<p><b>제26조 (특화센터)</b> 특화센터는 특화산업으로 지정된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하며 산·학·연 공동으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p>	<p><b>제26조 (특화센터)</b> 특화센터는 특화산업으로 지정된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화하며 산·학·연 공동으로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p>
<p><b>제27조 (직속부서의 장)</b> ① 기업지원단장(또는, 지역사업단장 등)전략산업기획단장 및 특화센터장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전문가의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고 있고 공무원이 아닌 자(교육공무원인 국·공립대학교의 교수는 예외로 한다) 중에서 직속부서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이 임명하며 상근이어야 한다. 단, 직속부서장 중 전략산업기획단장의 임</p>	<p><b>제27조 (직속부서의 장)</b> ① 지역사업단장, 전략산업기획단장, 특화센터장 및 정보산업진흥본부 S/W사업단장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전문가의 능력과 경험을 인정받고 있고 공무원이 아닌 자(교육공무원인 국·공립대학교의 교수는 예외로 한다) 중에서 직속부서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원장이 임명하며 상근이어야 한다 단, 직속부서장 중 전략산</p>

산자부 표준정관(안)	대전TP 정관(안)
<p>면의 경우에는 산자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직속부서장은 제14조 제2항에 따라 경영진에 속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상의 사용자로 간주되고, 임용조건은 3년의 계약직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연봉과 기타 대우 등에 관하여서는 원장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p>	<p>업기획단장의 임면의 경우에는 산자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p> <p>② 직속부서장은 제14조 제2항에 따라 경영진에 속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상의 사용자로 간주되고, 임용조건은 3년의 계약직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연봉과 기타 대우 등에 관하여서는 원장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p>
<p><b>제28조 (경영지원팀(또는 경영지원실))</b></p> <p>① 원장은 법인 내의 모든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경영지원팀(또는 경영지원실)을 별도로 두고, 팀장은 원장이 임명한다.</p> <p>② 경영지원팀(실)의 직무 범위는 회계, 경리 및 각 직속부서에 대한 행정지원업무 등 원장이 정한 업무범위에 한한다.</p>	<p><b>제28조 (경영지원팀(또는 경영지원실))</b></p> <p>① 원장은 법인 내의 모든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경영지원팀(또는 경영지원실)을 별도로 두고, 팀장은 원장이 임명한다.</p> <p>② 경영지원팀(실)의 직무 범위는 회계, 경리 및 각 직속부서에 대한 행정지원업무 등 원장이 정한 업무범위에 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5 장 위 원 회</b></p> <p><b>제29조 (운영위원회)</b> ① 법인의 주요사업 기획 등 업무추진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직속의 운영위원회를 둔다.</p> <p>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p> <p>④ 위원은 원장, <u>기업지원단장(또는지역사업단장)</u>, 전략산업기획단장, <u>특화센터장</u>, 산업자원부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그 외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따라 관련 전문인력과 참여기관 관계자를 관련 직속부서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단, 법인에 최다출연한 기관이 기초지자체 및 민간기관일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추천한 1인을 당연직으로 한다</p> <p>⑤ 산자부·광역지자체를 제외한 기관중 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5 장 위 원 회</b></p> <p><b>제29조 (운영위원회)</b> ① 법인의 주요사업 기획 등 업무추진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직속의 운영위원회를 둔다.</p> <p>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p> <p>④ 위원은 원장, <u>지역사업단장</u>, 전략산업기획단장, <u>특화센터장</u>, <u>정보산업진흥본부 S/W사업단장</u>, 산업자원부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고, 그 외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에 따라 관련 전문인력과 참여기관 관계자를 관련 직속부서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단, 법인에 최다출연한 기관이 기초지자체 및 민간기관일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추천한 1인을 당연직으로 한다</p>

산자부 표준정관(안)	대전TP 정관(안)
<p>출연기관 1인을 당연직으로 한다.</p> <p>⑥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p>	<p>⑤ 산자부·광역지자체를 제외한 기관중 최대 출연기관 1인을 당연직으로 한다.</p> <p>⑥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p>
<p><b>제30조 (인사위원회)</b> ① 직속부서의 장을 포함한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 직속의 인사위원회를 둔다.</p> <p>② 인사위원회는 원장이 추천하는 1인, <u>기업지원단장(또는 지역사업단장 등)</u>, 전략산업기획단장, <u>특화센터장</u>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지명한다.</p> <p>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p><b>제30조 (인사위원회)</b> ① 직속부서의 장을 포함한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 직속의 인사위원회를 둔다.</p> <p>② 인사위원회는 원장이 추천하는 1인, <u>지역사업단장, 전략산업기획단장, 특화센터장, 정보산업진흥본부 S/W사업단장</u> 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지명한다.</p> <p>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p><b>제31조 (자문위원회)</b></p> <p>① 원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 예산, 자산 및 사업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자문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p>	<p><b>제31조 (자문위원회)</b></p> <p>① 원장은 필요한 경우 기획, 예산, 자산 및 사업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자문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6 장 재 산 및 회 계</b></p> <p><b>제32조 (재산)</b>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p> <p>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li> <li>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이 출연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li> <li>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li> <li>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li> </ol> <p>③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표1 과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6 장 재 산 및 회 계</b></p> <p><b>제32조 (재산)</b>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p> <p>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li> <li>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이 출연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li> <li>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li> <li>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li> </ol> <p>③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표1 과 같다</p>

산자부 표준정관(안)	대전TP 정관(안)
<p>④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하며,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p>	<p>④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구성하며,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충당한다.</p>
<p><b>제33조 (재산의 관리)</b>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동 재산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편성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p> <p>③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p> <p>④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p> <p>⑤ 기타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p>	<p><b>제33조 (재산의 관리)</b>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기타 동 재산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편성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p> <p>③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p> <p>④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p> <p>⑤ 기타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p>
<p><b>제34조 (재산의 평가)</b>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p>	<p><b>제34조 (재산의 평가)</b>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에 의한다.</p>
<p><b>제35조 (잉여금의 처리)</b> ① 각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월 손실금의 보전</li> <li>2.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 이월</li> <li>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li> </ol>	<p><b>제35조 (잉여금의 처리)</b> ① 각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월 손실금의 보전</li> <li>2.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 이월</li> <li>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li> </ol>

산자부 표준정관(안)	대전TP 정관(안)
<p><b>제36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b> 예산외의 채무 부담, 채권의 포기나 자금의 차입(당해연도 내에 상환하는 일시 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b>제36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b> 예산외의 채무 부담, 채권의 포기나 자금의 차입(당해연도 내에 상환하는 일시 차입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b>제37조 (회계의 원칙)</b> ①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발생 시점에 처리한다. ② 특별회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아니한다.</p>	<p><b>제37조 (회계의 원칙)</b> ①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발생 시점에 처리한다. ② 특별회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아니한다.</p>
<p><b>제38조 (회계연도)</b>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회계연도에 의한다.</p>	<p><b>제38조 (회계연도)</b>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회계연도에 의한다.</p>
<p><b>제39조 (사업계획과 예산)</b>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 명세서</li> <li>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 명세서</li> </ol>	<p><b>제39조 (사업계획과 예산)</b>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 명세서</li> <li>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 명세서</li> </ol>
<p><b>제40조 (결산)</b>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p>	<p><b>제40조 (결산)</b>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이</p>

산자부 표준정관(안)	대전TP 정관(안)
<p>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업무현황, 재산목록, 감사결과 보고서</li> <li>2.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 명세서</li> <li>3.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 명세서</li> </ol>	<p>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업무현황, 재산목록, 감사결과 보고서</li> <li>2.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 명세서</li> <li>3.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 명세서</li> </ol>
<p><b>제41조 (임원의 보수 결정과 제한)</b> 법인의 상근직 임원에 대한 보수와 기타 대우 수준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상근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p>	<p><b>제41조 (임원의 보수 결정과 제한)</b> 법인의 상근직 임원에 대한 보수와 기타 대우 수준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상근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p>
<p><b>제42조 (재산대여 금지)</b> 법인의 재산은 그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p>	<p><b>제42조 (재산대여 금지)</b> 법인의 재산은 그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p>
<p><b>제 6 장 보 칙</b></p>	<p><b>제 6 장 보 칙</b></p>
<p><b>제43조 (정관의 변경)</b>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b>제43조 (정관의 변경)</b>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b>제44조 (공무원의 파견)</b> ① 원장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파견 공무원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을 즉시 복귀 조치하여야 한다.</p>	<p><b>제44조 (공무원의 파견)</b> ① 원장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파견 공무원의 복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무원을 즉시 복귀 조치하여야 한다.</p>

산자부 표준정관(안)	대전TP 정관(안)
<p><b>제45조 (외부감사)</b> 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자원부가 합동으로 실시한다.</p>	<p><b>제45조 (외부감사)</b> 법인에 대한 외부감사는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자원부가 합동으로 실시한다.</p>
<p><b>제46조 (해산)</b>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b>제46조 (해산)</b>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b>제47조 (공고의 방법)</b>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p>	<p><b>제47조 (공고의 방법)</b>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해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p>
<p><b>제48조 (잔여재산의 귀속)</b> ①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관, 단체 등에 기증하여 당초 지원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도록 한다. 단 대학에서 출연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연구기자재 등 물품은 출연한 대학에 귀속한다.</p> <p>②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산업자원부에 잔여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 권리이전 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p>	<p><b>제48조 (잔여재산의 귀속)</b> ①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에 귀속시키거나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관, 단체 등에 기증하여 당초 지원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도록 한다. 단 대학에서 출연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연구기자재 등 물품은 출연한 대학에 귀속한다.</p> <p>②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94조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산업자원부에 잔여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 권리이전 절차를 취한 후 재산을 인도하여야 한다.</p>
<p><b>제49조 (시행규정)</b> ① 법인의 제 규정은 원장이 제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의 중요 규정 이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제정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b>제49조 (시행규정)</b> ① 법인의 제 규정은 원장이 제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의 중요 규정 이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제정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p>

산자부 표준정관(안)	대전TP 정관(안)
제50조 (준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50조 (준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X월 X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 당시 종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임명된 원장과 전략산업기획단장, 각 특화센터장의 임기는 보장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u>2008년 X월 X일</u>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폐지) 재단법인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 정관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 당시 종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임명된 각 사업단장 및 전략산업기획단장의 임기는 보장한다. 단 부이사장인 본부장은 이사대우로 2009년6월30일까지 임기를 보장한다.

**【 별표1 】**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기본재산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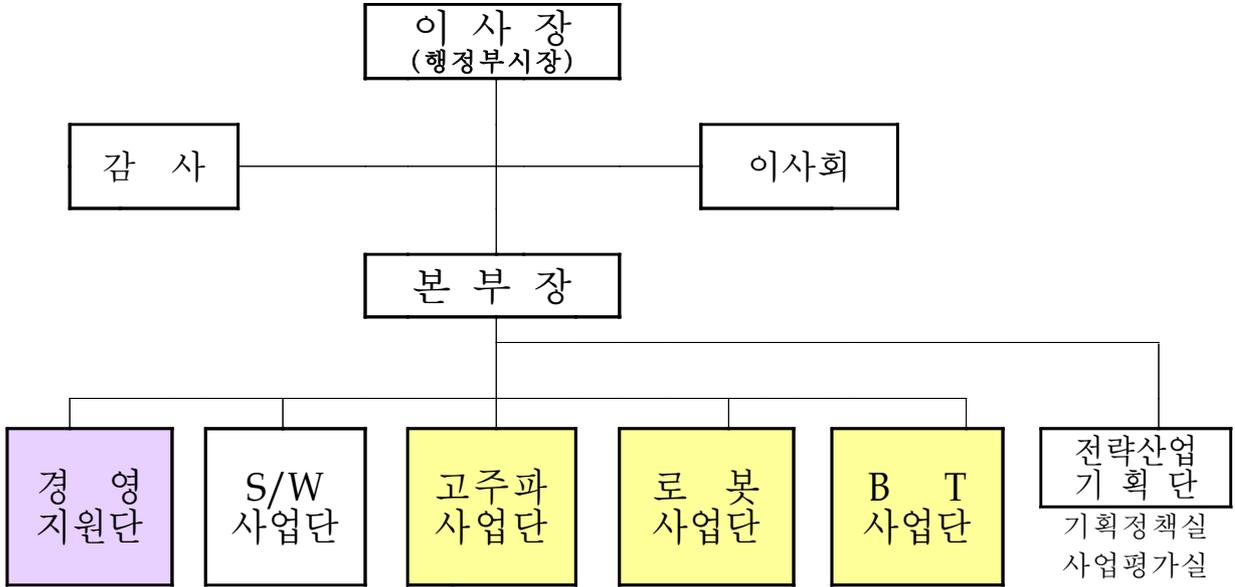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재 산 명	금 액	비 고
출연금	6,000	6,000 (IT발전기금5,000 포함)
건축물	1 동	지능로봇센터

< 정관 제32조 관련 >

※참 고

조 직 도(현행)



조 직 도(변경)

